

北韓의 性別 不平等 實態와 展望

이 금 순*

◇ 目 次 ◇

- | | |
|-------------------|-----------------|
| I. 서 론 | IV. 북한여성의 지위 전망 |
| II. 사회주의하에서의 남녀평등 | V. 결 론 |
| III. 북한여성의 불평등 실태 | |

I. 서 론

여성들의 권리가 곧 인권이며 사회발전 및 인류발전을 위해서는 성(Gender)을 둘러싼 구조적 사회불평등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지난 9월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유엔여성대회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여성문제를 접근하는 국제적인 연대노력이 가속화되면서, 각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연구도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편적인 여성의 문제와 더불어 특정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특수한 여성문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들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여성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의 평등한 권리는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여성의 실태를 조명하여 보고자 한다.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부터 사회주의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을 표방하여 왔고 이를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육아 및 가사의 사회화 정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 사회내에서 여성들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삶의 실태가 어떠한 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들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북한 여성들 자신이 그들의 실제 삶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학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접근하려는 시도도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북한 여성들의 삶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법과 제도측면에서 접근하여 온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폐쇄성으로 부터 파생된 전반적인 북한연구가 지닌 한계성 때문에 북한 여성연구 또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고, 향후 북한 여성문제의 개선 전망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현재 까지는 여성문제에 대한 북한 여성들 자신의 의식도 부재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으며, 북한의 철저한 폐쇄정책으로 북한여성들은 세계적인 여성운동의 영향권에서도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여성문제는 문제의 성격상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국가에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한 여성들간의 연대는 그 어느 분야보다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 여성들간 기존의 교류를 검토하여 보고 향후 교류·협력책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II. 社會主義下에서의 男女平等

1. 理論的 背景

북한사회가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는 모든 억압과 착취의 근원은 생산수단 소유의 私有財產制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혁명목표는 사유재산(계급) 철폐를 통해 전면적인 평등구조를 실현하는 것이다. 맑스는 여성문제를 자본과 노동간의 계급투쟁의 생산관계안에서 설명하였고, 엥겔스와 레닌은 여성의 억압과 여성해방에 대한 이론에서 남녀평등의 이념을 명시하고 있다.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여성억압의 기원은 사적소유의 생산관계하에서 사유재산보존과 상속을 위한 일부일처제의 출현에서 부터라고 규정하였다.¹⁾ 즉 원시시대의 자연스런 성별분업이 잉여의 발생, 사적소유, 계급의 출현 등으로 여성에게 억압적인 것으로 전화되었으며, 일부일처제의 출현은 “자연적 조건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에 기초한, 즉 원시적 자연발생적 공동소유에 대한 사적소유의 승리에 기초한 가족형태”라는 것이다.²⁾ 원시공동시대 여성의 가사활동은 남성의 생산활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종의 사회적 활동이었으나 가부장적 일부일처제의 개별가족 출현과 함께 집안살림은 그 사회적 성격을 상실하게 되고, 사회와 무관한 부차적이며 ‘사사로운 일’로 전락되게 되었다. 사적소유하의 일부일처제는 여성을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게 하고 여성의 종속을 강화시켜 대외적으로 여성의 충분한 사회참여를 박탈하게 되었다. 결국 여성의 억압은 계급의 억압과 연관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원인이 가족에서의 남성지배와 여성종속이라는 적대관계를 초래하

1) Frederick Engels,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New York : Penguin, 1985).

2) 위의 책, p.128.

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해방도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의 폐지에 따른 생산관계의 변화와 연관되며, 사적소유의 폐지는 남성중심의 일부일처제를 동등한 일부일처제로 변혁시켜 여성해방의 조건을 제시한다. 이는 생산수단이 공유화되게 되면 개별가족이 더 이상 사회의 경제단위가 되지 않을 것이고 사사로운 집안살림이 사회적인 산업으로 되고,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시키는 것이 공공사업으로 되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혼에 상호간의 애정이외에는 아무런 동기도 작용하지 않게 되며, 경제적 지배의 단순한 결과인 남성들의 지배는 경제적 지배의 소멸과 함께 자연히 소멸된다고 설명한다.

레닌의 여성해방이론은 엥겔스와 마찬가지로 맑스의 사적 유물론(Historical Materialism)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엥겔스보다 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여성억압에 대해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고찰을 하고 있다. 레닌에 따르면, 여성의 낮은 사회적·인간적 지위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 진정한 해방은 오직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또한 진정한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여성의 해방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 된다. 그는 여성해방을 두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첫번째 단계로는 여성을 열등한 상태로 얹눌러 놓았던 법률들을 제거함으로써 남녀평등을 위한 법적·형식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여성을 개인적 가정본위의 소비경제로부터 해방시켜 대규모적 사회적 소비경제로 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³⁾ 사회주의 생산 관계하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은 노동을 통해서만 생존하고, 또한 노동활동을 통해서만 자신을 실현하는 평등한 구조가 창출된다고 설명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강조한다. 레닌에 따르면 여성해방의 핵심적인 조건은 여성들의 사회적 생산노동에의 완전한 참여와 가사노동의 부담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러나, 여성해방에 대한 관심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이론에서

3) 이상화, “사회주의 이념과 남녀평등,”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주최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발표논문(1992.11.30).

는 여성억압을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일면적으로 고찰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상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의 억압과 종속의 근원적인 기반인 성별분업을 생산관계에서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여성해방을 위한 해결정책도 생산관계의 변화이외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여성정책의 역사를 보면 사회주의국가에서 여성취업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입장과 여론은 맑스·레닌주의 기본원칙을 견지하기 보다는 경제정책이나 고용정책의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즉 사회주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여성취업을 최대화하려는 노력, 가족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여성의 취업활동을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시기에 따라 채택되었으며, 어느 시기에는 상반되는 두가지 여성의 역할을 동시에 연결시키기도 한다.

또한, 현실사회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노동 참여를 위한 사회적 생산 관계가 성립되었지만, 전반적인 성별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역할의 규정이 여성해방의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의 기본 인간관은 각 개인의 인간성 발현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인간 개인으로서의 발현 보다는 가족내에서 여성역할을 기본으로 한 인간성 실현으로 규정한다. 즉 재생산(임신, 출산, 양육)을 일방적으로 여성의 당연한 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의해 야기되는 여성억압의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사회주의 역사에서 남녀평등의 문제는 주로 법률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제한적으로 다루어 왔으며 사회주의 이론자체에 남녀평등을 가능케 할수있는 총체적인 이론들이 결여되어 있다. 엥겔스와 레닌의 이론은 경제적 의존으로 인한 억압과 예속을 정확하게 분석해냈으나 성별분업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및 인간 재생산의 문제에 대한 이론이 부재하다. 사회주의 국가 역시 성별분업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붕괴에 따른 위기감에서 현실사회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으나, 여성문제는 중심적인 논의에서 제외되어 왔다.⁴⁾

2. 북한의 여성정책

가. 사회주의 남녀평등에 입각한 여성정책

북한사회는 1945년 정권수립과 함께 사회주의 남녀평등을 공식적으로 표방하여 왔다. 사회주의 혁명정권 수립방법으로 “자산소유의 불평등한 경제적 하부구조를 와해하고, 가부장적 전통에 바탕을 둔 상부구조로서의 사회적 관계를 청산”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전통적 가족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여성해방이 중요한 관건이었다. 김일성은 여성문제 해결을 통해 남성가장 중심의 봉건적 사회·경제질서를 청산하는 대신 여성을 새로운 정치적 지지기반세력으로 건국사업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치적 동원 필요성에 더하여 해방이후 북한인구가 대량 월남한 결과 초래된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⁶⁾

1946년 3월에 발표된 「북조선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에서 토지분배의 원칙을 “가족수와 그 가족내의 노동능력을 가진 자 수”의 원칙으로 제시하였고 같은 해 6월 공포한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에서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은 노동 권리와 의무를 갖는 사회주의 근로여성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조건을 갖추었다. 이에 더하여 1946년 7월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고 9월에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시행세칙」을 발효하여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질서를 청산하고 여성해방과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여성해방을 위한 법적 조치와 함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병행하여 왔다. 여성노동력의 사회적 동원을 위하여 탁아소나 유아원 건립을 통한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장려하

4) 이금순, “남북한 여성 비교 연구 :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통일문화연구 (下)」(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193-293.

5) 전상인, 「북한 가족정책의 변화」(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15-16.

6) 위의 책.

여 1945년 11월 조선민주녀성동맹(여맹)을 창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성의 사상적 혁명화와 계급교양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북한은 해방직후 몇년동안 사회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여성해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들을 마련하였다. 이는 북한에서 “그 이후 40년을 통해 수행된 제반 여성정책 전체보다 질이나 양에 있어 더 다양하고 철저”⁷⁾했던 것으로 평가 되기도 하지만, 전쟁이후 북한의 정책변화를 보면 초기의 여성해방을 표방하던 정권의 의도에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다.

나. 여성정책의 변화과정

(1) 여성동원기(1946~1959)

북한 여성들은 사회주의적 근로여성의 원칙과 정권초기부터 제시된 “… 농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촌녀성들이 농업생산에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⁸⁾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농촌여성들의 참여를 촉구했고, 공업생산노동에도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가두여성, 가정부인들이 건국노동에 참가했다. 북한 여성들을 농업 및 공업 생산노동에 동원하는 사업은 6.25 전쟁중에 더욱 강화 되었다. 여성들은 후방의 공고화와 전쟁승리를 위한 식량증산에 조직동원되었다.⁹⁾ 또한 전쟁기간동안 공장, 기업소의 생산노동에도 여성들이 대규모로 동원되었다. 6.25 전쟁후 복구 건설에 노동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남성노동력의 부족으로 여성노동력을 동원시켰으며, 농업집단화 과정에서도 여성노동력이 강제로 배치되었다. 이와 같은 여성노동 동원은 “녀성로력을 광범히 인입함으로써 우리의 로력전선을 보충하며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상업·체신·보건·문화·교육 등 기관에서 사무보는 일에 녀성로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채용할 것이며 그들의 노무를 위하여 여러가지 사업상 편리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사무기관에서 남성로력을 녀성로력으로 교체하여 그

7)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서울 : 한울, 1991), p.78.

8)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2)」, p.214.

9) 리경혜, 「녀성문제해결경험」(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0), pp.86-87.

들을 생산직장으로 돌릴 것이다.”라는 1953년 8월 김일성의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한 로력문제의 해결대책”에 관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¹⁰⁾ 1953년부터 농업집단화가 완료되는 1958년까지 농촌여성들의 노동참여가 가속화되었다. 또한 이시기의 여성노동력의 증대는 1차 5개년계획(1957~61)과 외부 경제원조의 격감으로 노동력 강화를 통한 생산증대 방안으로 실시된 1957년의 ‘천리마운동’과도 직접 관련되어 있다.

(2) 이중적 여성정책기(1960~1979)

1960년부터 1970년대까지 북한은 이중적인 여성정책을 취하여 왔다. 이 기간 동안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표방하면서 가사 및 가정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김일성 유일체제를 구축하고 김정일 후계체제를 준비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가부장제를 환원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여성들의 경제참여를 여러 부문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행정적 조치(1962년 2월에 채택된 내각명령 제3호, 1967년 10월에 채택된 내각명령 70호)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¹⁾ 이에 따르면, “인민경제 여러부문에 더 많이 진출시키기 위하여 여성들의 체질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남성로력을 다른 힘든 부문으로 돌리고 여기에 여성로력을 배치하도록”하여 방직공장의 수리공, 양수기운전공, 관리일꾼, 공장, 기업소의 통계원, 부기원, 경리원과 같은 자리에 여성을 배치하고 “탄광, 광산, 임업, 수산업 등 어렵고 힘든 부문에” 청장년을 배치한다는 것이다.¹²⁾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해석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여성들을 특정직종(흔히 여성의 체질과 능력에 맞는 것으로 간주되는 직종)에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성별 직종분리를 심화시켜 왔다. 그리하여 여성은 경공업부문과 단순사무직, 서어비스(상업편의봉사)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 나

10) 리경혜, 「녀성문제해결경험」

11) 위의 책, p.96.

12) 위의 책.

라에서 로동자는 남자로 형상하지만, 농민은 언제나 여성이 벼단을 안고 있거나 낫을 들고 있는 것으로 형상하고 있다”¹³⁾라는 구절에서도 성별 직종분리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1970년에 들어서 6개년경제계획(1971~76)기간동안에 나타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해 ‘3대 기술혁명’을 강력히 추진하게 되었다. 여성들이 결혼과 함께 직장을 떠나게 되고, 기존 기혼여성들의 비취업율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결혼으로 인한 여성노동력의 유실방지정책을 취하였다. 이는 가족법 9조에서 남18세, 여17세 이상으로 정해 놓은 결혼연령을 남30세, 여28세 이상으로 장려하고, 각종 사회주의 노력 경쟁운동, 정치적 사상교육 강화, 가정의 혁명화 등 여성을 노동계급화 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70년 11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녀성들을 부역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결정이후, 1971년 10월 7일 여맹 제4차대회에서 김일성이 「녀성들을 혁명화·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를 발표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참여를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1978년 4월 사회주의로동법에서 노동의 의무를 명시해 강제노력동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성근로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참가할 수 있게 제반조건을 보장해 주도록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들은 가내작업반과 가내협동조합을 조직토록 하여 55세 이상의 여성을 비롯한 부양가족의 유휴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⁴⁾

(3) 국가가부장적 정책기(1980~현재)

1980년대들어 북한 사회가 경제적 침체를 맞게 되고 김정일 후계체계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사회주의 대가정’개념을 도입하여 가부장적 국가관을 강화하여 왔다.¹⁵⁾ 이 기간에는 경제사정의 악화로 여성실업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른 가구소득의 감소와 여성의 남성의

13) 위의 책, p.98.

14) 여성개발연구원,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서울: 여성개발연구원, 1992), p.64.

15) 조선로동당출판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8-81.

존도가 심화되었고 남성가장들의 제반 사회적 불만을 가정내에서 희석시키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로 여성의 재가정화가 진행되었다.¹⁶⁾ 또한 동시에 여성의 노동력을 가정생활과 연계시켜 이용하려는 발상으로 가내작업반을 강화하고 여성의 노력동원등을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여성의 가정내에서의 역할 강화는 가부장적인 정책으로 사회주의 여성해방의 기본원칙과 실질적으로 모순된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경공업분야에 관해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1984년 이른바 「8.3 인민소비품 생산확대운동」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의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에 따르면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유휴로력으로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조직운영하고 가내편의봉사원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가내작업반의 활동을 강화시키게 되었고 유휴노동력의 대부분이 여성이었던 실정을 감안하면 이는 여성노동력의 동원을 의미한다. 가내작업반 강화정책은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침체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북한은 2차 7개년계획(1978~84)을 추진한 아래 경제성장율이 2%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1980년 후반에 들어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혼여성의 실업율이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기혼여성이 직업노동에서 제외되는 것이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강제적으로 실행되었다는 측면과 이들 기혼여성이 가내작업반 활동에 유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¹⁷⁾ 이들을 순수한 실업인구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80년대 후반부터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시장경제 제도로 인해 여성들이 부업을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증가되었고,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연령층의 인구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직업노동에로의 강제적인 동원 필요성도 저하되게 된

16) 전상인, 「북한 가족정책의 변화」, p.61.

17) 박순옥, “소문없이 큰일 하는 가내작업반,” 「조선녀성」(1980.10), pp.39-40 ; 본사기자, “인민생활의 참된 주부답게,” 「조선녀성」(1986.2), pp.26-27 ; 한복희, “소문없이 큰일 한 여성들 : 평성시 두무동 가내작업반녀성들에 대한 이야기,” 「조선녀성」(1986.3), pp.31-32.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산업예비군화’ 현상이 사회주의 여성노동정책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명백히 드러나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체 경제구조에서 노동력의 필요도에 따라 기혼여성의 직업노동 참여도가 규정되게 된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산업 예비군’인 기혼여성들이 실제상에 있어서 직업노동이 아닌 지원봉사대 명목으로 강제적으로 동원 이용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여맹조직을 통한 당의 교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¹⁸⁾

III. 北韓女性의 不平等 實態

사회내에서 여성의 지위(위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공적영역(사회참여)과 사적영역(가정)에서의 역할 등 가능한 한 많은 측면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물론 실질적으로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역할이 명확히 분리되어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여성의 사회참여는 여성에게 일반적으로 고정된 역할 즉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북한 여성의 지위를 규명하기 위하여 북한 여성들의 공적 영역(사회참여)에서의 위치와 사적 영역(가정)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8) 김성룡, “그들은 탄부의 심정으로 산다 : 석탄전선을 도와나선 문덕군 안주로동자구안의 녀맹원들에 대한 이야기,” 「조선녀성」(1979.2), pp.28-29 ; 강영희, “우리도 주인 이랍니다 : 철도를 힘있게 지원하고 있는 정주군 읍기두녀맹원들에 대한 이야기,” 「조선녀성」(1979.5), p.45 ; 박순옥, “우리는 지원자가 아니다 : 혜산시건설에 떨쳐나선 <충성의 7.3녀성지원대>원들에 대한 이야기,” 「조선녀성」(1980.2), pp.34-35 ; 박순옥, “부전령의 선로공안해.” 「조선녀성」(1980.7), pp.31-33 ; 강영희, “순천땅에 세 차례 타번지는 지원의 불길.” 「조선녀성」(1988.4), pp.18-19 ; 본사기자, “우리녀성들은 2000일 전투에서 높은 충성심을 발휘하자,” 「조선녀성」(1988.3), pp.17-18.

1. 공적 영역에서의 불평등

여성의 공적 영역(사회참여)에서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경제활동과 정치 참여로 구분지워질 수 있으며, 단순한 참여율의 분석이 아닌 여성의 사회 참여가 어떤 양태로 이루어져 왔는 가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의 사회참여가 실질적인 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여성의 사회 참여과정에서 평등과 더 나아가 사회참여에 의해 받는 혜택에서의 평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경제참여에서의 불평등 실태

북한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북한여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가 하는 성별 직종격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유엔이 제시하는 표준분류방식에 따른 통계를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여성의 구체적인 직업별 비율에 대한 통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북한 중앙통계국의 직업분류방식을 보면, 1) 국영농장 및 기업소의 육체노동자 2) 공무원 및 관리직 3) 협동농장 농장원 4) 협동단체공장 및 기업소의 육체노동자로 나누고 있어 세계 표준 분류방식과 완전히 다르다. 1987년 여성비율은, 국영기업소노동자 57%, 공무원 16.8%, 농장원 25.3%, 협동기업소노동자 0.9% 등으로 나타난다. 1958년 7월 19일에 공포한 “인민 각 경제부문에 여성들을 더욱 인입시킬데 대하여”에는 교육 및 보건부문에 여성비율을 평균 60% 이상, 기타에는 30% 이상으로 제고시키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반드시 여성들을 배치시킬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교육 및 보건부문이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이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또한 여성노동력은 개별적 특성에 맞게 배치한다는 내각결정은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이 중화학공업 중점육성이며 이를 위해 남성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여성노동력의 역

량을 ‘가볍고 쉬운 일’에 적당한 것으로 인식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 나타나고 있는 여성의 직종분리 현상이 똑같이 보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1970년대 초 북한여성 인력은 경공업(70%), 인민교사(35%), 농업부문(60%)에 집중되어 있다.

1963년 북한의 29만 4천명의 전문가 및 기술자중 여자는 4만 3천명으로 전체의 14.6%에 불과했으나 1989년에는 총 135만명 중 37%에 달하는 50여만명이 여성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과연 북한의 전문가 및 기술자의 직종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1979년 9월 김일성은 「전국 로동행정일군대회」에서 “로동을 고착시키며 전문기술분야에 있어서는 대를 이어 한가지 직종에 정통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직종간의 이동을 어렵게 하여 노동력 구조가 고착화된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직종은 여성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섬유산업이다. 농촌협동농장 등에서는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여성지배인이나 관리위 원장의 비율이 높지만 관리직 전체에서의 여성비율은 현저히 낮다.

북한여성의 임금의 실태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27조와 사회주의로동법 제37조에 “로동의 양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적확히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일로동 동일임금원칙을 공식화하고,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은 성별, 연령에 관계 없이 같은 로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는 것이다. 임금지급방식에는 크게 도급지불제와 정액지불제가 있으며 도급지불제는 주로 노동자와 농민에게 적용되며 작업반단위의 노동기준량과 생산량에 맞게 임금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정량은 1년단위로 재조정하나 실제로 있어서 사회주의 노동경쟁운동을 통해 기준량을 높이기 때문에 실제 노동력 수탈의 방법이 되어왔다. 정액지불제는 의사, 교사, 사무원에게 적용되어 직능과 급수에 따른 임금차이가 있다.¹⁹⁾ 노동에 대한 보상은 임금이외에 연합 가급금, 기술 가급금, 지하, 항해 가급금, 유해 가급금 등이 있고 식량, 부식, 의복, 공산품 배급권 같은 현물대가도 있다. 공식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여성의 평균임금은 월70

19) 한국여성개발원,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pp.94-96.

원선으로 계층별 임금수준의 하위에 속한다.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의한 것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낮은 계급, 사회적으로 경시되는 직종, 보다 손쉬운 작업장에 비숙련노동자로 집중 배치되어 그에 따른 낮은 임금과 보상을 받는 직종분리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북한여성의 취업경로를 살펴보면, 북한에서는 개인의 직업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노동력배치에 따라 규정된다. 정권초기에는 비교적 직장이동이 용이했으나, 사회주의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노동력은 중앙의 엄격한 통제에 들어가게 되었다. 노동력의 배치는 국가계획위원회가 노동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의 각 분야에 필요한 노동자의 수를 결정하면, 노동성이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중앙으로부터의 노동력배치의 문제점이 노출되자, 1960년대 후반부터는 국가의 유일적 지도하에 도·시·군 노동행정기관들이 각 지역실정에 맞도록 배치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모든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은 학교를 졸업하면 우선 정무원이 도별로 배치하고, 도인민위원회가 가정성분, 사상, 학업성적, 재학중의 정치활동 참가실태 등을 고려하여 시·군 및 부서 배치를 하게 된다.²⁰⁾ 명목상으로는 노동력의 배치시에 성에 따른 차별이 부재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여성에게 적당한 직장에 배치한다는 식의 배려적인 조치가 실제로는 여성의 직업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층에 편중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시 말하자면, 84호 내각결정과 남녀노동력 재배치과정에서 제시된 배치의 기준은 여성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정이 풍부하며 체질적으로 연약한 여성들의 적성”에 배치하고, 남성은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문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양성의 능력의 차이에 따른 성별분업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여성들을 각 부문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기초로한 것으로 평가된다.²¹⁾ 또한 경제구조가 악화되자 기혼여성을 가정으로 복귀시

20) 김태일, 「북한 국영기업소의 관리운영체계」(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59.

21) 장필화, “북한사회의 성별분업,”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주최 통일문제학술 세미나 발표논문(1992.11.30).

켜 상황에 따른 보조노동력으로 동원시켜온 점도 주목해야 한다.

나. 정치참여에서의 불평등 실태

여성의 정치적 역할과 지위는 국가가 여성의 전반적인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사회참여의 한 요소이다. 국가정책은 실질적인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며, 거의 모든 정치체제가 성평등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영향력을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46년 7월 30일에 선포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제1조와 제2조에 여성의 정치적 평등(남성과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을 규정하였고 1946년 9월 14일 발표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시행세칙 제1조에서는 “녀성은 남성과 같이 지방(도·시·군·면·리) 및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을 선거하며 또 위원에 피선될 권리 를 가진다. 녀성은 남성과 같이 국가기관, 정당, 사회단체 및 공공단체의 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적 정치평등이 실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왔는가라는 문제를 통해 북한 여성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북한은 정권초기에 토지개혁과 인민위원회 구성 등 사회개조 과정에서 여성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성운동조직이 주장 하던 남녀평등을 위한 조치(일부일처제, 문맹퇴치, 동일노동 동일임금)를 수용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제도수립과 함께 여성의 혁명화·계급화를 목표로 여성의 정치활동을 조정해 왔다. 또한 북한은 여성의 사회적 해방이라는 명분아래 정치부문에서 여성동원을 의도적으로 계획하며 이를 통하여 당노선과 국가정책을 철저히 지지하고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여성지지세력을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여성의 정치사회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북한여성의 정치사회화 정책은 여성에 대한 정치교육과 사회주의 경쟁운동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북한의 여성 정치사회화의 실상을 살펴보면 여성정치교육은 여성들로 하여금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불러 일으켜 정치체제에 대한 기반

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행되어 왔다. 북한 여성들의 정치교육은 주로 지도자(김일성과 김정일)가 제시하는 모범적인 여성상을 전체 여성의 표본으로 교육해 왔다. 북한 여성의 학습대상인 모범적인 여성으로는 김일성의 어머니였던 강반석과 김일성의 아내이며 김정일의 어머니였던 김정숙을 들고 있다. 강반석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어머님이시며 우리나라 여성해방운동의 위대한 선구자이시며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²²⁾로, 김정숙은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여성영웅이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우신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²³⁾로 묘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은 본인 자신이 공산주의 혁명가로 생활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혁명가의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전통적인 여성의 덕목(순종과 현신)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정치화 정책의 한 형태인 사회주의 경쟁운동은 모두 노동당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정책적으로 특정운동을 결정하고 하급기관에 명령을 내리면 당하부단체들은 그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 월기대회나 충성결의 모임을 갖도록 해 결의사항을 채택하여 왔다.

북한여성의 정치참여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권력기관과 근로단체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위치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한다.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관심도의 지표로 이용되는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는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사회에서 조선로동당은 실질적으로 행정부·사법부·입법부의 상위에 군림하는 최고권력기관으로서 모든 사회기관, 단체, 직장에 각기 당 위원회를 두고 있다. 북한에서 권력의 핵심체인 로동당에 입당하는 데는 원칙적으로는 제약이 없다. 18세 이상이면 성별에 관계없이 출신성분과 사회주의 건설에의 참여도에 따라 입당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여성이 당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성과 같이 일반적으로 당성과 가정환경 혹은 직장에서의 노력영웅 등의

22) 「백과전서1」(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2), p.139.

23) 위의 책, p.713.

경력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여성지도자들에게 여성의 권익을 대변·옹호하는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당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여성인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임무를 주로 한다.

전체 조선로동당원중 여성당원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와 있지 않으나 대략 최고인민회의나 지방인민회의 여성대의원의 비율과 비슷한 20~25% 가량이 되리라 추정된다.²⁴⁾ 또한 일반당원중 여성의 비율은 커다란 의미가 없으며, 당내에서도 지도부의 결정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의 여성비율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정책결정구조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당 중앙위원회의 로동당내에서의 위상을 고려할때 당 중앙위원회내에서의 여성비율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나 약 5% 미만이었다.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에서의 여성대의원 비율을 살펴보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경우 피선거권은 중앙당에 의해 결정되며 여성입후보자의 비율이 결정되며 그대로 당선되어 왔다.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는 조선민주여성동맹을 포함한 제 사회단체·정당, 국가기관 기업소의 종업원회의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 추천회의에서 추천한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²⁵⁾ 이는 여성조직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전문 직업정치인이라기보다 1년에 1~2회 열리는 정기회의에 참가하는 것 이외에는 자기본래의 직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명예직의 성격이 강하며, 중앙당이 대의원 입후보자를 지역, 계급 분포, 여성비율 등의 세부사항을 결정하면 이에 따라 정해진다. 여성대의원의 일정비율을 명문화하지 않았으나 거의 20%선은 유지하여 왔다. 지방주권기관인 지방인민회의의 경우도 여성대의원 비율이 22~33%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⁶⁾

북한여성의 정치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는 여성단체의 정치적 역량을 분석하는 것이다. 여성을 포함한 북한주민들은 누구나 연령과 직업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회주의로동자 청년동맹(만14세~30세), 조선

24) 손봉숙, 「남북한 여성의 정치참여도 비교연구」(서울 : 학림사, 1991), p.58.

25) 이계만, 「북한국가기관론」(서울 : 대영문화사, 1992), p.64.

26) 손봉숙, 「남북한 여성의 정치참여도 비교연구」, p.240.

직업총동맹(만30세 이상의 노동자와 사무원), 조선농업근로자동맹(만30세 이상의 농업노동자), 조선민주여성동맹(타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만18세~만55세 여성) 등과 같은 근로사회단체에 가입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북한여성들은 1개이상의 근로단체에 참여하여 정치사회화 과정을 겪어 왔다. 근로단체는 사회주의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근로대중의 자발적 조직으로 알려져 왔으나 실질적인 사상교양조직으로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당의 보조자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명분상 이는 사회적 집단이 개인 생명의 원천이며, 집단이익 가운데 개인의 이익도 포함되며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집단이 발전하는 조건이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들 근로단체중 여성만이 참여하는 조직은 조선민주녀성동맹이나 1983년 조직개편이래로 실질적으로 약화되었다. 이와같이 북한의 유일한 여성단체인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들의 자발적인 조직이 아닌 당과 국가를 위한 여성동원, 여성사상교육조직으로서 향후 북한여성들의 정치적 역량을 집결시킬 수 있는 일종의 압력단체로 성장할 가능성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2. 사적 영역에서의 불평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사회주의 남녀평등과는 대조적으로 실제적으로는 북한여성의 사회참여실태는 불평등하게 이루어져졌다. 가정에서의 북한 여성의 위치도 사회주의체제에서 표방하는 사회주의 남녀평등과 실제의 삶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기존의 유교적·전통적 가족제도가 권위주의적이고 혈연적 귀속성이 강하므로 사회주의 혁명에 장애가 되며, 봉건적 가족관계는 남성우월적 제도로 여성을 정치·경제적으로 억압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압박과 예속에서 해방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속에서 그들에게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즉 사회주의적 가족의 개념은 가족상호간의 평등, 특히 남녀간의 평등이 확실하게 보증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와같은 사회주의 가족제도 실현의 기틀을 1946년 7월 공포한 「남녀평등권 법령」에 명시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부장적 대가족제도를 타파하기 위하여 1955년 가족주의 내지 혈연·문벌을 상징하는 호적제도를 없애고 신분등록제도와 「공민증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농지의 집단화 및 중요산업의 국유화 조치로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물질적 기반을 제거하였다. 또한 가사노동의 사회화,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추진하며, 가정의 혁명화를 강조하여 왔다. 북한 체제하에서 국가는 가족관계의 ‘원만한 조정자’ 역할과는 달리 ‘직접적인 간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문제, 혼인연령의 규제, 이혼에 있어서 재판이 혼만을 협용함으로써 사실상 협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 친권행사에 있어서 국가의 간여, 임양 및 후견에 있어서 주민행정기관의 승인 등이 있다.

북한은 초기의 전근대적 가족질서의 단절을 목표로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1970년대 주체사상의 등장 이후 가족관계에서 전통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외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평등한 가족질서를 표방하여 왔으나, 실제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부권이 강조되는 전통적인 가부장질서가 유지되어 왔다. 또한 폭 넓은 금혼의 범위, 부성추종의 원칙, 넓은 가족부양의 범위, 경로사상의 표현 등이 1990년 가족법에 포함되게 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남녀평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및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평등한 사회진출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가사는 모두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뿌리깊게 잔재해 있기 때문에 북한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노동의 주체로 사회참여를 하면서도 근로의 과중한 이중부담을 안게 된다. 이는 북한 가족내의 전통적인 역할관계, 즉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철저히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부부간의 역할분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즉 김일성은 “본래 여자의 본분은 어린애들을 기르는 일”이라고 선언했고, 여맹도 “요리란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일이며 여성들의 타고난 의무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권 초기에는 활발히 진행된 가사의 사회화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위한 조치들이 1970년대 이후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

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여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더욱이 1980년대 이후 북한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사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퇴조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직장생활, 사회교양에 더하여 가사노동을 전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여가 시간은 전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늘 과로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⁷⁾

잔존하고 있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남존여비사상은 북한여성의 삶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여성상은 전통적인 어머니, 아내, 며느리의 역할을 반영하고 있으며, 가정의 화목은 며느리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권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정내의 폭력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통계자료는 나와 있지 않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정 폭력이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는 점은 가정 폭력이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식량문제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경제사정이 악화될 경우 여성의 삶이 더 위협받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제한된 음식물은 우선적으로 아버지, 아들, 딸의 순서로 주어지게 되며, 어머니인 여성은 항상 마지막 순서가 되게 된다. 또한 귀순자 이옥금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식구들의 식량을 구하는 것이 여성의 주요 책임으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해 가족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²⁸⁾

3. 평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여성들은 북한이 정권초기부터 표방하여

27) 송철복 외 역, 「북한의 인권」(서울 : 고려원, 1990).

28) 「중앙일보」, 1994.5.12.

온 사회주의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원칙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사회참여와 가정생활에서 매우 불평등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기본적인 여성인권 침해로 간주되는 여성의 성폭력 실태를 살펴보면, 입당 및 취업을 미끼로 한 강간 및 일반적인 여성에 대한 성폭행과 가정에서의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⁹⁾ 당 간부 등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여성들을 유혹하여 성폭행을 한 뒤 그 대가로 당원자격을 주는 일이 잦은 것으로 보도된다. 또한 김정일의 경호조직인 호위총국 제5과가 여성들을 선발하여 위안여성조직(일명 기쁨조)으로 특별 관리한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여성의 성과 향락의 도구로 인식하는 풍토를 엿볼 수 있다. 직장내에서의 성희롱에 대해서도 문제의식 조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 및 비난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여성의 순결의식에 따라 개인의 성폭행 사실을 숨기려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사회에서 성폭행을 여성의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그들 사회가 사회주의 남녀평등에 입각하여 여성차별의 문제가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가부장제의 부활로 실제 여성들의 삶은 평등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북한 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남성 세대주의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여성들의 지위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즉 사회주의 남녀평등에 입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예를 들어 여성도 남성과 같이 노동에 참여할 권리와 부여받았지만 전반적인 여성에 관한 가부장적 사회의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의 삶에 가중한 짐으로 작용해 왔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여성자신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기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사회는 철저히 통제된 사회로서 성차별 철폐를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29) 송철복·외 역, 「북한의 인권」, pp.81-86.

세계적인 여성운동의 조류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자신들의 사회가 완벽한 성평등을 실현하였다는 국가적 사상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저항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여성들은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국가와 당의 명령에 따라 사회에 대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가부장적인 윤리에 충실한 여성으로 강요당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IV. 北韓女性의 地位 展望

1. 국제적인 여성운동과 북한여성

성별 불평등이 사회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래 성차별(Sexism)은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이며 정의롭지 못한 현상으로 분석되기 시작했으며, 1975년 유엔의 〈세계 여성의 해〉 선포와 함께 성차별 제거는 인류발전을 위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성차별이란 생물학적인 성을 기초로 하여 여성(혹은 남성)집단이나 여성(혹은 남성)개인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가된 편견이나 차별을 뜻한다. 즉 성차별은 남성과 여성이 각 성에 적합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 믿음(고정관념)으로서 개인의 생활의식과 제반 사회제도 및 문화 이데올로기에 내면화되어 성차별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성차별은 인류사회 발전을 위해 추구하는 인간성의 존중, 정의, 합리주의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이와 같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곧 여성의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도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시키고 있다.

1979년 유엔 총회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채택하였다. 이 여성 차별철폐협약은 여

성문제를 국제적 차원으로 끌어낸 것으로서, 여성의 인권선언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별에 근거한 불평등한 대우, 성에 기인하는 불이익,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차별 철폐정신의 핵심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제거를 통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기 삶의 긍정적인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의 문제가 인권보호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의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³⁰⁾ 몇년전까지만 해도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권문제로 규정되지 못하고 국제인권사회의 관심도 받지 못하였다.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당시에도 유엔은 여성이나 혹은 성과 관련된 특수한 인권사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엔나 선언과 행동강령은 “여성의 평등한 지위와 인권”을 정부와 유엔의 최우선 사안으로 규정하고, 공사적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는 것을 주요한 인권의무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여성 인권에 있어서의 향상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며, 유엔이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선포한 아래로 이루어진 여성운동가들의 노력의 결실이었다. 여성들은 왜 여성의 권리와 삶이 인권과 남성들의 삶에 부차적인 것으로 규정되는 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고, 보편적인 인권보호차원에서 이를 변화시키려는 조직적인 노력이 1990년대에 들어서 가시화되게 된 것이다. 여성인권에 대한 세계적인 캠페인은 ‘성폭력에 대한 60일간의 행동’에서 본격화되어 11월 15일(세계 여성폭력 반대의 날)을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일)과 연계하였다. 또한 여성들은 유엔 인권회의에서 여성인권문제를 회의의 모든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하여 줄 것과 모든 문화·인종·계급에 걸쳐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성폭력을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124개국의 50여만명 명의로 청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의 결실로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학대가 기타 인권침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형성되었다.³¹⁾ 전통적으로 여

30) UNHCR, *Human Rights : the new consensus*(New York : Regency Press, 1994).

31)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are Women's Right*(London : Amnesty International, 1995).

성의 권리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어 정부나 비정부단체들이 신중한 대처를 하지 않아 왔다. 아직도 다양한 형태의 성차별과 폭력으로 인하여 희생당하는 여성의 수가 여타의 인권침해로 인한 희생자의 수를 능가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침해 실태는 출생이전 여자유아들의 살해, 여자어린이들의 불균형적인 영양실조, 여자라는 이유로 모든 연령층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폭력 등을 포함한다.

실제로 일반적인 인권침해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보편적인 것에 대하여 특수한 측면을 포함하게 되며, 여성의 인권침해는 거의 가려져 왔다. 국제사회에서 여성들은 조직적인 연대를 통하여 다양한 차원의 여성인권 침해 실태를 부각시켜 왔다. 즉 가정에서의 인권침해, 분쟁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 여성의 신체에 대한 침해, 여성의 인권에 대한 사회 경제적 침해, 정치적 박해 및 차별 등의 차원에서 여성의 권리가 논의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은 피해자로서 뿐만 아니라 인류의 삶을 규정짓는 세계인권논의 과정에서의 참여자로서도 인정받기를 원하였다. 이를 위해서 여성들은 다양한 사회문제, 예를 들어 개발과 민주주의문제에 연관된 성의 개념과 논의들을 적용시키도록 노력하여 왔다. 모든 차원의 인권 논의에 성의 개념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여성인권이 별개의 부분이 아닌 전반적인 인권논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권리상의 성의 합의는 더욱 더 상세히 규정되어야 하며, 여성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성, 인종, 계급, 문화 등의 다양한 제반요소들의 상호작용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여성인권을 위한 연대적인 노력은 조직적인 노력에의 참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에게 힘을 부여하는 교육과정이 되었다. 즉, 유엔이나 국제인권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조직적 노력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여성들의 고통이 인권침해이며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혹은 전 세계적 기구에 의해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엔나 선언문은 여성의 권리는 “보편적 인권의 불가양도의, 본질적이고, 불가분한 부분임”을 선언하고, 성에 근거한(gender-based)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 교육, 안전한 산모 및 보건, 그리고 사회적 지원을 위한 국가별 실천과

국제협력”을 촉구하였다.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에 의해 조직된 여성조직이 정부기구, 비정부기구, 유엔기구의 여성들과 유엔 인권기구(유엔인권센터, 조약국, 특별보고관 등) 요원들의 회의를 주도하여, 비엔나 선언문의 실천과 향후 여성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중에 세계인권회의의 여성분과는 그간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여성의 권리에 대한 견해를 폭넓게 반영한 동시에 인권위 증 유엔의 인권기관들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3년 제49차 유엔인권위원회는 여성의 권리문제를 유엔인권장치의 일부로 통합시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규탄하였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여성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직(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을 신설하여, 여태껏 인권영역밖에서 문화적 혹은 사회적 문제로 여겨졌던 전통적 관행을 포함한 가정폭력과 분쟁상황하의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의 포괄적인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다루게 하였다. 그리고 1995년 2월에 공개된 유엔인권위원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실태에 관한 인권특별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크게 확산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구 유고연방과 같은 분쟁지역에서의 조직적 집단적 강간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범죄가 매스미디어와 비정부기구들에 의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분쟁지역에서의 강간행위를 국제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감시 및 조사활동을 위한 제도 모색이 1995년 9월 제4차 북경여성대회에서도 주요의제가 되었다.

위와 같은 국제적인 여성운동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첫째, 유엔의 결의 및 권고사항이 각 개별 국가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힘은 없지만 개별 국가들이 유엔의 결의 및 권고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유엔은 1975년이후 각 사회에서 여성들의 실태를 점검하여 왔고 각 국가들이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행하여 왔는지 보고하도록 하여 왔기때문에, 개별국가들이 여성문제를 별개의 정책분야로 상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국제적인 여성운동은 일반 여성들로 하여금 성 평등(gender equality)에 대해 인식하게 하였고, 그 결과로 자신들이 처해 있는 불평등한 위치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적인 여성연대(global sisterhood)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각 개별국가내의 여성조직이 세계적인 조직과 연계하여 활동하면서 사회내의 영향력이 향상되게 되었다.

북경회의에서는 전 세계 181개국에의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차원에서 각국이 유엔이 제시한 행동강령들을 얼마나 준수했는가를 논의했고, 또한 비정부기구들을 중심으로 한 NGO Forum에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의 다양한 여성문제들을 제기하여 성에 따른 차별과 억압이 없는 평등세계를 이루기위한 국제적인 여성연대를 모색하였다.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적 억압로부터 정치·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경험한 억압의 실태들을 토로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³²⁾ 그러나 북한여성들은 자신들이 마치 완전한 남녀평등사회에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문제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남한여성들과 연대하여 정신대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기위한 모임에 참여한 이외에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사회주의체제만이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교육하여 왔으며, 사회주의국가 여성들의 국제행사를 유치하였다. 그러나 세계민주여성축전과 같은 행사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아픔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며, 성평등에 대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북한은 서구에서 제기된 여성학적 차원에서의 성차별 제거 운동과 유엔이 주도하는 남녀평등을 위한 노력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철저히 통제된 사회였기 때문에 국제적인 여성운동의 영향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32) 「중앙일보」, 1995.9.15.

2. 남북한 여성의 교류·협력 방안

북한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에 얼마나 불평등한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많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적절한 답은 그들의 위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남한 여성이라고 할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남북한 사회에 전통적인 가치로 여겨져온 남존 여비의 사상과 연계된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를 고착시켜 왔다. 남북의 대결구조하에서 민족해방이라는 명목하에 실질적인 정복의 대상으로 남한을 인식해 온 북한의 정치체제하에서 여성은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의 희생이 되어왔다. 남한이라는 적과의 전쟁을 항상 염두에 둔 사회체제에서 북한의 경우 분단상태를 빌미로 한 권위주의를 사회전체에 확산시켜왔다. 이에 더하여 공산당에 의한 독재체제하에서 국가에 의한 폭력의 사용은 정당화되었으며 일반화되어 왔다.

위와 같은 분단의 아픔은 비단 북한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한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작용하였다. 한반도의 분단상황에서 남북의 군사적인 대결구조가 지속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군사적 가치에 모든 것을 종속시키려는 군사주의 문화가 남한에서도 확대되어 왔다.³³⁾ 이러한 과정에서 권위의 집중화, 위계화, 규율강화, 획일화 등을 강조하면서,³⁴⁾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와 결합하여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사회전반에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강화되었다. “권위에 대한 복종, 경쟁에서의 승리, 대화와 타협보다는 물리적인 힘을 통한 문제 해결, 적에 대한 정복논리”³⁵⁾가 사회의 중심가치관으로 확산되면서 전통적으로 강자로 규정되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예속이 정당

33) 김정수, “분단, 그리고 여성의 삶,” *사무직 여성*, 9호, pp.74-83.

34) 최장집, “제3세계의 군사화와 평화,” 이호재 편, 「한반도 평화론」(서울 : 법문사, 1989), p.136.

35) 김정수, “분단, 그리고 여성의 삶,” p.80.

화되었다.³⁶⁾ 또한 분단상황이 사회적으로 성역할 분리를 자연스럽게 강화 시켜 왔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남녀의 공사역할 분리는 남성의 국방의 의무와 이에 따라 그 안에서 보호자 남성을 위로하고 보호받는 일은 여성의 몫으로 이분함으로써 가부장적 성역할 분리가 정당화되었다.

또한 권위주의 문화가 정치·경제·사회 전 영역에서 심화되었으며, 정치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하여 봉건적 왕권사회의 관료조직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가부장적 종족조직과 유사한 정치체제로 이어졌다.³⁷⁾ 정당조직이 개인(남성)지도자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문중조직의 형태로 유지되면서 여성은 이로부터 소외되어 왔으며, 국가의 법률과 제도 등에서 도 남성중심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왔다. 권위주의적 남성중심의 사회에서는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되며, 이에 따라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이 무시되기 쉽다.

‘전쟁’을 늘 염두에 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적과 동지로 구별하고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힘을 사회적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적은 단순히 대립 경쟁하는 관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복하여 없애야만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사회적 폭력이 정당화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되었고 이러한 폭력이 사회에 일상화되어 남성의 여성에 대한 구타와 성폭행으로 이어져 왔다. 군사문화하에서 가부장적인 남녀의 이중적 성 윤리가 더욱 강화되어 왔으며, 자본상업주의의 매매춘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여성의 성 상품화가 극대화되면서 여성은 공식적인 영역에서 배제되어 사적인 존재로 소외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한반도의 분단은 남북한 사회에서 공히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강화시켜 왔으며, 여성들의 삶에 근본적인 제약구조로 작용하여 왔다. 따라서 남북한 여성의 분단으로

36) 전통적인 가부장제하에서는 권력과 무력, 물질을 소유한 집단은 남성들이었고 여기서 소외된 여성들은 남성들의 지배와 힘에 대해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강요당하였다. 자세한 참조사항은 이효재, “한국사회의 군사주의 문화와 여성,” 기독교평화연구원 연구총서 2집 「여성 평화」, 1991.

37) 가부장제하에서 개인의 기본관계는 부계시조나 특정조상인 한 개인으로 귀착되며, 이러한 남성중심의 종족조직에서 여성은 혈통계승을 위해 자손을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예속될 뿐이다.

인해 받는 아픔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기존 4차례에 걸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를 통하여 남북한 여성간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91년 5월 일본에서 1차 토론회를 갖고, 91년 11월 2차 서울토론회, 1992년 9월 3차 평양토론회, 1993년 4월 4차 동경·오사카토론회를 가졌으나 1993년 10월로 예정되었던 5차 서울·부산 토론회는 핵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긴장관계로 인하여 무산되었다. 기존의 남북한 교류가 성공적으로 지속되지 못한 가장 큰 요소는 양측이 이를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남북한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나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과 같은 기존의 교류 체계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민간차원에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할 수 있는 공동연구과제를 찾아내 새로운 교류의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공식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제3국(중국이나 일본)에서 해외교포 여성들을 매개로 한민족여성들의 공동연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³⁸⁾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서로의 삶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여성들이 그들의 삶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인식을 하게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과 북한에 살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심도있고 체계있는 연구를 통하여 보편적인 여성문제를 보다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이며 모든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가능성성이 높은 분야가 여성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 사회전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38) 한국여성연구원, 「한민족 여성의 한국문화관과 통일의식」, 한민족 여성학술대회 및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자료집(1995.11).

V. 結 論

북한이 정권초기부터 표방하여 온 사회주의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원칙과는 달리 북한여성은 실제로 사회참여나 가정생활에서 불평등한 지위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남성과 동등한 조건에서의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가사의 사회화도 동시에 추진하였다. 그러나 명목상으로 남녀에 따른 차별이 없기 때문에 여성도 전직종에 취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북한여성은 일차적으로 ‘여성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하다고 규정되는 특정직종에 집중 배치되어 왔다. 따라서 북한 여성의 취업은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 단순사무직, 서어비스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특정 직종내에서도 여성은 대부분 하위직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성별 직종분리의 결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금은 계층별 임금수준의 최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북한여성의 경제참여는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 노동원칙에 따른 노동력 동원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더하여 여성의 노동은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조절되며 가내작업반 강화에서 보여지듯이 일차적으로 여성의 가정내에서의 역할과 연계하에 이용되어 왔다.

또한 북한 여성의 정치참여는 당과 국가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동원의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정치참여를 통해 북한사회내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북한여성의 권력기관 예의 참여율을 보면 당과 최고인민회의 및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중 여성비율은 평균 20%를 넘는 수준이나 실제 정치적 실권을 갖는 당중앙위원회와 같은 고위직에서 여성비율은 평균 5% 미만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여성들은 공적영역(사회참여)에서의 불평등과 함께 사적영역(가정)에서의 불평등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한 사회체제 확립과

정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사회주의 대가정’개념을 도입하여 가부장적 국가관을 강화하였다. 이 결과로 북한은 사회주의 기본원리에서 선회하여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를 부활시키게 되었다. 가부장적인 권위체계하에서 전통적인 남존여비의 가치가 팽배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태하에서도 여성들은 그들의 불평등한 처지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여졌다. 이처럼 북한 여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제여성운동에서 제시되는 것과 같은 진정한 성평등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 여성들의 삶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북한 여성들의 문제의식이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한 공통적인 아픔을 경험한 남한 여성들과의 교류·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남북한 여성들이 서로의 삶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비정치적 차원에서 남북한 여성 공동과제를 추진하여 서로의 위치와 문제점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과 ‘일본군 위안부문제 아세아 연대회의’와 같은 기존의 교류체제를 활성화하고 제3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여성들과의 모임을 통해 한민족 여성연대를 이루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할 때, 남북한 여성의 한반도 통일의 주춧돌이 될 것이며, 여성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수립하여 진정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